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35호 2023. 2. 1. (수)

공 포

- 조례 제15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림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 ---2
- 조례 제15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례 제15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4
- 조례 제158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조례 제1586호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0
- 조례 제158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조례 제1588호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6
- 조례 제158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발 령

- 훈령 제35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19

공 고

- 제2023-127호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1
- 제2023-1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 제2023-13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공 람											
--------	--	--	--	--	--	--	--	--	--	--	--

공 포

○부산광역시복구조례제15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림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청림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청림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자로 하는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상위법령의 개별규정이 중복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 평가」에서 폐지권고를 받은 바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청림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생활체육단체”를 각각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개정(폐지) 이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 신설(제3조)
- 나. 지도·감독 등 대상에 체육회 추가(제4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당 조례와 유사한 사업으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 우리구만 제정되어 있는 등 실효성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복구조례제1585호

부산광역시 복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복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복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복구청장

부산광역시 복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복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복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의2(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유품정리”란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장례”를 “공영장례 등”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례”를 “공영장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유품정리는 복구 거주자에 한한다.

제3조제1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연고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장례”를 “공영장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례비를”을 “장례비 등을”로, “장례 지원”을 “장례 등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례”를 “공영장례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1항”을 “제1항”으로, “200% 범위에서”를 “200%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유품정리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로 한다.

5.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제1항 중 “별지 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로, “장례”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각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장례수행자 및 유품정리자는 장례 및 유품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비용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 및 유품정리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 등의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장례 지원”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례”를 각각 “장례 및 유품정리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장례 지원 금품을”을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을”로, “장례 지원 금품의”를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의”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와 경제적 능력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제1조의2)

나. 조문 정비 및 인용 조항 정정(제2조 ~ 제9조)

다. 지원 대상 단서 신설(제3조)

라. 지원내용에 유품정리 및 지원 금액 범위 명시(제5조제1항제5호, 제2항)

마.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비용 청구 및 청구기일 신설(제6조제4항, 제5항)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86호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먼지털이기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이란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여 의복과 신발에 묻은 흙, 먼지 등 오염물을 털어내는 시설을 말한다.
2. “압축공기”란 먼지털이기 내 압축된 고압의 공기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먼지털이기 시설을 검사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먼지털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
2. 먼지털이기 시설의 유지관리기준
3. 먼지털이기 시설의 실태조사
4. 먼지털이기 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5. 그 밖에 먼지털이기 시설 이용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설치) 먼지털이기 설치에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및 주택지 등 현지어건 감안한 적합 여부
2. 이미 설치된 인접 시설과의 중복 설치 여부
3. 먼지털이기 시설 설치상 관련 법령 등 충족
4. 예상 이용자 수요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먼지떨이기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시점검은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지떨이기 설치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먼지떨이기 설치에 관한 사항

3. 먼지떨이기 안전점검 및 위탁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원 녹지 관련 담당과장과 환경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1. 공원·녹지·산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3.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행정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주민참여)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건의, 고장 신고 등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전사고 예방, 고장 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위험요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지역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일명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규정을 정하고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종합관리계획(제4조)
- 라. 시설설치(제5조)
- 마. 안전점검(제6조)
- 바. 위탁(제7조)
- 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8조 ~ 제11조)
- 아. 주민참여(제12조)
- 자. 홍보(제13조)
- 차. 협력체계 구축(제14조)

공 포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8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단,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정보를 간소화하여 공동주택 내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조정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확대(제3조)

나. 분쟁 자문·조정 신청서 안내사항 신설(제1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누설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의 목적(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
- 라. 지원대상(제5조)
- 마. 사업추진(제6조)
- 바. 사업위탁(제7조)
- 사.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제8조 ~ 제9조)
- 아. 정보누설 금지(제10조)
- 자. 협력체계 구축(제11조)

발령

○부산광역시북구훈령제35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 세무2과장”을 “재무과장, 세무1과장”으로, “도시재생과장”을 “도시창조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위성영상의 공개제한의 분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별표 1의 위성영상의 공개의 분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사항 반영

나.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별표 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위성영상 분야) 개정사항 반영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27호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설치 및 적정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46504)
- 2) 연락처 : ☎ 051-309-4264, FAX) 051-309-4279, E-mail : kong0202@korea.kr

※ 이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ukg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3.1.25.자 행정기구 개편 ▷ ‘공동주택 관리’ 사무 이관(건축과 → 도시창조과)
3.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2조제2항제2호)

▶ “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 소관부서의 장”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도시창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51-309-5214 또는 팩스 051-309-4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 관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u>건축과장</u> 3. (생 략) ③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공동주택 관리 소관부서의 장</u>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3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2.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3.1.25.자 행정기구 개편 ▷ ‘공동주택 관리’ 사무 이관(건축과 → 도시창조과)

3.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4조제2항제5호)

▶ “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 소관부서의 장”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도시창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51-309-5214 또는 팩스 051-309-4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동주택관리 소관부서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4. (생략) 5. 건축과장 ③ ~ ⑤ (생략)	제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공동주택관리 소관부서의 장</u> ③ ~ ⑤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